

第1次 會議에서 들었으므로 油印物로 代替하고 곧바로 委員 여러분의 質疑와 執行部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同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興鎮委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興鎮委員 同 案件이 지난 常任委에서 保留된 바 있습니다. 企劃室長께서 앞으로 이 條例案에 대해서 어떻게 對處해 나가실 것인가를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지난 번에 保留된 事由가 議會 承認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保留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問題는 事業의 決定段階에서 各 常任委員會에서 자연스럽게 報告가 될 것이고, 또 審査를 하는 過程에서는 審査委員 中에 市議員님들을 審査委員으로 委囑을 해서 또 자연스럽게 이 問題를 議會와 執行部가 協議를 거치는 過程을 밟도록 이렇게 運營을 할 計劃입니다.

○委員長 李聲九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면 이상으로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에 대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3급이상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 3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규정한 사항
6.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 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위촉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6 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 7 조(위원회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p>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 8 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국·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p> <p>제 9 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투자관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재정1계장이 된다.</p> <p>제 10 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 11 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 12 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hr/> <p>○委員長 李聲九 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p> <p>이상으로 第75回 臨時會 第2次 財務經濟委員會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p> <p>散會를 宣布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議事棒 3打)</p> <p style="text-align: right;">(12時 16分 散會)</p> <hr/> <p>○出席委員</p> <p>李 聲 九 曹 相 彩 金 璨 會 裴 丁 洙 趙 熙 濬 孟 今 龍</p>	<p>李 秉 守 廉 東 秀 趙 石 萬 鄭 興 鎮</p> <p>○專門委員 安 錫 洙</p> <p>○出席公務員 農水產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 長 金 炳 龍 管理部長 姜 炳 云 流通部長 李 圭 正 企劃管理室長 金 義 在</p>
--	---